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행일자 : 2025-0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가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8.9.5, 2011.2.1>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8., 2022.09.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2022.09.14>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본조신설 2011.2.1.] <2022.09.14>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항만공사
2. 관람집회시설공사
3. 전시시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LNG 저장탱크공사) [본조신설 2011.2.1.]<2022.09.14>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거 제한 할 수 있다. 단,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6.12.27., 2021.7.26., 2022.09.14, 2025.01.16>

제5조(사전심사기준일 등)

- ① 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또는 본 세부기준의 다른 조항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개정 2006.12.27, 2007.8.28., 2022.09.14>
- ②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당공사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해당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해당 사실 발생일로 본다. <개정 2006.12.27., 2022.09.14, 2025.01.16>

③ 제2항의 감정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 “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당공사가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당공사에 제출하여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025.01.16>

제6조(배점기준)

① 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3]와 같다. 단,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07.8.28., 2011.2.1.>

② 해당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025.01.16>

③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방법)

① 사전심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및 당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1, 2006.12.27., 2007.8.28., 2009.3.31, 2009.5.19., 2012.6.26., 2022.09.14>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022.09.14>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2022.09.14, 2023.12.19> <2024.04.04><2024.09.06>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참여도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7., 2007.5.4., 2007.8.28., 2008.9.5., 2009.3.31., 2009.12.29., 2011.2.1., 2011.7.12., 2012.1.5., 2012.10.26., 2016.4.12., 2021.7.26., 2022.09.14>

1. 시공경험

가.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8]에 의한다.<2022.09.14>

(1) 에너지저장시설공사(LNG 저장탱크공사) : 별표1

(2) 상기 “LNG 저장탱크공사” 이외의 공사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2022.09.14, 2025.01.16>

다.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최근 5년간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최종년도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자료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6]과 같다. <2022.09.14>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022.09.14>

마.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2022.09.14>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2022.09.14>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2022.09.14, 2024.09.06>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 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2022.09.14>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한다.<2022.09.14>

(4) 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2022.09.14, 2024.09.06>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급받아 당공사에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당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022.09.14, 2024.09.06>

3. 시공평가 결과

가. 해당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당공사 시공평가지침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22.09.14, 2025.01.16>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80점 적용<2022.09.14>

(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2022.09.14>

(3)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2022.09.14>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2022.09.14>

라. 시공평가 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다른 방법(산술평균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2022.09.14>

4.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도 <2022.09.14>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과 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그 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지역 및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일부 구성원의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와 중소기업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시공비율만 인정한다.<2025.01.16>

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관련기관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포함한다. <2022.09.14>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와 중소기업의 수를 합산하여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도 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2022.09.14>

5. 신인도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2022.09.14>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2022.09.14>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2022.09.14>

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2022.09.14>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녹색건축 인증실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해당공사 평가 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22.09.14, 2025.01.16>

(1) 삭제 <2022.09.14>

(2) 삭제 <2022.09.14>

라. 부실벌점 평가 <2022.09.14>

(1) 부실벌점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과 당공사에서 부여한 부실벌점을 합산한 벌점에 의한다. <2022.09.14, 2023.12.19>

(2) 당공사에서 부여한 부실벌점은 당공사 “부실벌점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한 벌점을 적용한다.<2022.09.14>

마.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녹색건축 인증실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해당공사 평가 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22.09.14, 2025.01.16>

바. 평가요소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2022.09.14, 2025.01.16>

⑤ 제3항 및 제4항의 각 분야(항목) 평가시 각종 명세표(리스트 포함) 미작성, 증빙서류 누락 등 부실작성된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1(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부서는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내부인원 비율을 100%로 한다.<2024.04.04>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스공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가위원회 정족수는 <별표9>를 따른다. [본조신설]<2024.04.04>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22.09.14>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평가에 적용한다. <개정 2006.12.27., 2009.12.29., 2011.2.1., 2011.7.12., 2012.6.26., 2021.7.26., 2022.09.14>

1.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급자재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2022.09.14>

3.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22.09.14>

4. 상기 1호 내지 3호 및 5호에 의한 시공비율 평가는 입찰공고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5. 삭제 <2021.7.26., 2022.09.14>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2022.09.14, 2023.12.19>

7.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본다.<2022.09.14>

③ 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6.12.27., 개정 2005.7.21., 2006.12.27., 2007.8.28., 2011.2.1., 2021.7.26.>

1. 경영상태 <2022.09.14>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나. 상기 '가'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2022.09.14>

(1)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022.09.14>

(2)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LNG저장탱크 건설공사와 천연가스 주배관건설공사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 공사 실적 미보유사의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025.01.16>

(가) 공사예상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2025.01.16>

(나)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모든 면허자격을 보유할 것 <2025.01.16>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단, 대표사는 제외한다)<2025.01.16>

(라) 입찰공고문에 가점 부여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2025.01.16>

(4) (3)의 가점은 다음과 같이 실적 미보유사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가점은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2025.01.16>

(가) 합산지분율 10% 이상 : 3점<2025.01.16>

(나) 합산지분율 20% 이상 : 4점<2025.01.16>

(다) 합산지분율 30% 이상 : 5점<2025.01.16>

나. 기술능력 <2022.09.14>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022.09.14>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2022.09.14>

(가) 종합공사로서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구성원이 속한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만,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2022.09.14>

(나)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2022.09.14>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해당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022.09.14, 2025.01.16>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2022.09.14>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지역업체 또는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 해당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도를 평가하거나 지역업체 또는 중소기업 가점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또는 중소기업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2.1.5., 2021.7.26., 2022.09.14>

⑤ 제4항에 따른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한다.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제4호 “다”에 의하여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이 경우 평가는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표2]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의 배점기준을 따른다.<2025.01.16>

⑥ <삭제, 2025.01.16>

⑦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27., 개정 2009.9.1., 2011.2.1.>]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022.09.14>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주공사 업종을 명시한 경우는 주공사) 시공비율이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2.27., 2007.8.28., 2011.7.12., 2012.1.5.>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업체현황 조서(별첨양식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첨양식 4)
6.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7. 신용평가등급서류
8.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
9.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2024.09.06>
10.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11.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12.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2022.09.14>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1., 2006.12.27., 2008.9.5., 2009.5.19., 2011.2.1., 2021.7.26.>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2022.09.14>

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2022.09.14>

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2022.09.14>

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단, 구성원은 B-)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2022.09.14>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0점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2.1., 2022.09.14>

④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심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 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7.5.4, 개정 2009.9.1, 2011.7.12, 2012.6.26., 2014.3.5., 2022.09.14, 2025.01.16>

⑤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11.2.1.>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당공사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12.27., 2008.9.5., 2009.9.1., 2011.2.1., 2011.7.12., 2014.9.11., 2016.4.12. 2022.09.14>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2022.09.14>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2022.09.14>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2022.09.14, 2025.01.16>

5.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2022.09.14>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이 10%미만(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7.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2.09.14>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2022.09.14>

나. 삭제 <2021.07.26, 2022.09.14>

다. 삭제 <2021.07.26, 2022.09.14>

라. 삭제 <2021.07.26, 2022.09.14>

8. 그 밖의 입찰공고 및 다른 법령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2025.01.16>

②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25.01.16>

1.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
3.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 취소
4.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025.01.16>

③ 상기 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9.5>

제12조(심사결과 통지 등)

- ①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당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공시한다.
- ②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2.1., 2025.01.16>

제13조(기타 사항)

- ① 심사항목별 평점 계산은 입찰공고 또는 본 세부기준의 다른 조항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및 지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개정 2011.2.1>
-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이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04.04>

1. <삭제, 2024.04.04>

2. <삭제, 2024.04.04>

3. <삭제, 2024.04.04>

④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전심사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5년 1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2005년 6월30일까지는 [붙임] “종전기준에 의한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방법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3.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부 칙(제2005-14호)

1. 이 기준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종전 규정[당공사 지침 2005-01('05. 1.26)]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로 인정한다.

부 칙(제2006-0002호)

1. 이 기준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종전 규정[당공사 지침 2005-01('05. 1.26)]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로 인정한다.

3.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부 칙(제2006-0021호)

1. 이 기준은 2006년 12월 2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3. 신인도 평가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받은 평점은 동 평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제5조제4항제4호 '다'목 부실벌점 평가 규정 중 "당공사에서 부여한 부실벌점"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당공사에서 부과한 부실벌점부터 적용.평가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5월 4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3. 신인도 평가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받은 평점은 동 평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8월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지침2007-13, 2007.5.4)은 폐지한다.

부 칙

-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7-001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2008년 9월 5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7-001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2009년 4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2009년 5월 20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2009년 12월 29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2010년 8월 23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1년 2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1년 7월 12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2년 1월 6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2년 6월 26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인도 감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3 가목 3)의 신설 평가사항은 이 지침 시행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2년 10월 26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3년 11월 20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4년 3월 5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4년 9월 1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5년 12월 28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6년 4월 12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조제4항제2호 나목(1) 및 (4)의 개정사항은 2016년 5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09>

제1조(시행일)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9년 5월 20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17>

제1조(시행일)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2019년 5월 20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4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다. 9)는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목) 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7.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7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07월 26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부 칙 <2022.09.14>

이 지침은 2022년 0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9>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4.04>

이 지침은 2024년 04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9.06>

이 지침은 2024년 09월 0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1.16>

이 지침은 2025년 01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